

5.1.14 공무원양성센터운영규정

제정 2013. 11. 29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공무원양성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는 공직사회에 진출할 인재를 양성하여 본교의 명예를 높이고 본교의 교육이념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조직) ① 센터의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공무원양성센터장(이하 '센터장'이라 한다)을 두며, 센터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보조하고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정보를 수집·관리하기 위하여 학생조수를 둘 수 있다.

③ 센터 내 각 실에 대하여 실원 가운데 총무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실원의 자격과 의무) ① 센터의 실원은 본교의 학부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어야 한다. 단, 졸업생은 졸업 후 1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.

② 실원은 센터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센터장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실원은 자치적으로 결정된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원선발) ① 센터의 실원은 매 학기 개강 2주 이내에 본 센터장의 주관 하에 실시하는 선발전형에 지원한 자 가운데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학기 중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.

② 실원선발전형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.

1. 각종 공직관련시험의 1차 합격자
2. 재학 중의 학업성적
3. 센터장의 면접
4. 필요시 선발전형시험

제5조(예산 및 집행) ① 센터에 배정된 운영예산과 실원이 납부한 실비는 센터장이 집행한다.

② 전항의 예산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.

1. 입실시험 또는 모의시험 시행비용
2. 특강 실시 비용
3. 장학금 지급
4. 수험용 도서구입 비용
5. 기타 시설유지 및 운영 경비

제6조(장학금 지급) 센터의 각종 국가고시 및 공무원채용시험 합격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 및 도서구입비를 지급할

수 있다. 단, 별도로 정한 국가공인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퇴실)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실을 명할 수 있다.

1. 센터 내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자
2. 출석이 불성실한 자
3. 기타 센터장의 지도 및 감독사항에 위반하는 자

제8조(자치규정) 센터는 센터장의 승인 하에 실원에 대한 자치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